# 社會問題 概念定立에 小考

李 光 子
〈崇田大 社會事業學科 講師〉

目 次

Ⅰ. 머리말
Ⅱ. 社會問題 概念定立의 問題點
Ⅲ. 社會問題 概念定立에 관한 諸見解와 批判
Ⅳ. 社會問題 概念定立을 위한 客觀的 基準
Ⅴ. 맺는말

## Ⅰ. 머 리 말

社會問題의 概念을 정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에 따라 相異한 形態를 띠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社會問題를 가치관의 갈등(value conflict), 환경의 부적응(maladjustment), 인간관계의 결함(lack of human relations) 또는 사회규범으로부터의 逸脫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 그러나 이와같은 개념들은 대부분 추상적으로 또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진 개념들이다.

오늘날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 사회 주변에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문제 개념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의 方法論조차도 모호하고 해결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본론에서 우선 사회문제 개념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회문제에 관한 종래 개념과 정의를 음미하여 그의 개념적 취약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보다 보편타당한 사회문제의 개념정립을 위한 몇가지 基準을 提示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社會問題 概念定立의 問題

社會問題란 인간이 살고 있는 일상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現象[2]이라 할 수 있으며 特定한 時代의 歷史的 産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회학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의 개념규정에는 수다한 論議가 전개되어졌으

1) 김영모, "한국사회학", 법문사. 1972, p. 231.
2) Irbing Tallman and Reece McGee "Definition of Social Problems" in Handbook on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Rand, McNally Company, 1971. p. 39.

없다.

사회문제 개념규정에 있어서의 難點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복잡한 社會關係속에서 발생한다는데 있다. 문제는 "사회문제"라는 하나의 社會現象을 客觀的인 입장에서 어떻게 개념적으로 부각시키느냐에 있다.[3] 즉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회문제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사회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회문제 개념규정의 명확한 尺度내지 기준(criteria)을 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같은 기준없이 사회문제를 논의 연구한다는 것은 비체계적이고 비과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나 사회사업가들의 사회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바로 사회문제라는 개념규정에 있어 이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결여하고 있으며 같은 事實에 대한 相異한 설명과 상이할 見解를 표명하는데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社會問題 槪念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難點이 있다. 즉, 첫째, 오늘날까지 사회문제 개념은 任意的이고 抽象的인 수준에서 정의되어졌다는 것이다.[4] 즉 어떠한 출발점에서 배태되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왜 사회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한 소위 사회문제의 狀況(situation)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문제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해서 이에 대한 개념정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둘째, 社會問題 槪念規定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點은 主觀的 價値判斷 문제인데 만약 사회문제가 經驗的測定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진다면 바람직한 사회문제개념이 규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5] 오히려 사회문제는 객관적인 경험적측정에서보다는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가치기준으로부터 더욱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注視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사회문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 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Ⅲ. 社會問題 槪念定立에 관한 諸見解와 批判

사회문제 개념의 객관적 기준은 한마디로 달해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事件(events) 또는 狀況(situation)을 問題視(problematic)한 사건 또는 상황이 곧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6]

미국의 사회학자 E. Raab과 G. J. Selznick에 의하면 사회문제란 주로 인간간의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며 사회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첫째, 現在의 支配的인 사회관계가 많은

3) Ibid., p. 39.
4) Ibid., p. 40.
5) Ibid., p. 40
6) R. C. Fuller and R. R. Myers "Natural History of a Social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 1941, p. 320.

사람들의 중요한 目標를 저해시키거나 파괴시킬 때, 둘째, 또는 사회에 있어서 人間 間의 질서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기존사회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때 存在한다고 한다.[7] 즉 이들은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行爲를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았다. 사회문제란 개인과 개인간의 인간관계의 결함에서 온다기보다는 제도적 또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불균형적(disequilibria) 원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경향이 농후한다는 것을 是認할 때 이들이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究明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P. H. Horton과 G. R. Leslie는 그들의 저서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에서 사회문제란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集團的 社會行動(collective social action)을 통하여 시정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situation)에 처해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다.[8]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사회문제란 사회구성원 다수인에 의해 「問題視」(problematic)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그러나 이 문제시되는 상황을 社會福祉, 社會政策, 또는 社會事業과 같은 集合的 社會行動(collective social action)을 통하여 시정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있다.

Horton과 Leslie는 첫째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involve) 사람의 사회구성원 대다수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사회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 빈도가 적다면 사회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빈번히 비난, 不平할때 비로소 사회문제는 成立한다. 또한 누가 사회문제를 제기했느냐에 따라서 의식되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제기될수 있다고 본다. 둘째 사회문제란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發生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價値觀의 문제라 하겠다. 經驗的觀點에서 본다면 어떤 상황이 그 나라 대다수의 국민에 의해서 문제가 어떻게 의식되어졌느냐에 따라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社會的 條件(social condition) 그 자체가 사회문제의 必要條件 또는 充分條件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例를들면 인종차별 문제를 볼 때 사실상 인종차별은 미국보다 Pakistan이나 Saudi Arabia와 같은 전통사회에서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어서 인종차별 문제는 다른 어떤 사회에 있어서보다 가장 심각한 國內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美國人의 가치관에서 보면 인종차별이란 그들에게는 도저히 허용되어질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의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R. K. Merton에 의하면 사회문제는 사회현상으로서 顯在化(manifest) 되었을 경우에만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이 아직 현재화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潛在되어 있는 조건(latent condition)에서는 사회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

7) E. Raab and G. J. Selznick, "Major Social Problems", Second Edition, New York. Harper and Reve, 1959. p. 3.

8) P. B. Horton and G. R. Lesli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 Third Edi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5. p. 4

그러나 潛在的 條件은 어떤 경우에는 사회문제의 배태단계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또한 顯在化되었을 경우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內包할 수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例를들면 人口문제에 있어서 1950年代 까지만해도 人口專門家들에게만 인구문제 자체가 사회문제로 意識되고 있었지만 이같은 잠재적 상황은 1960年代로 접어들자 "人口暴發"의형태로 顯在化됨으로서 전문가들은 물론 그 以外의 모든 社會構成員들에 의해 의식되어졌으며 그 結果 인구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때 사회문제는 그것이 潛在化 段階에 있을 때 그의 적합한 치료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욱 效果的일 것이다.

Merton의 이같은 社會問題 形成過程의 두 개의 단계 區分은 사회문제 分析에 있어서의 時差的 槪念을 提示하였다는데서 그 意味가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 乃至 그의 豫防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문제의 잠재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早期發見되어질수록 사회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M. C. Walsh와 P. H. Furfey에 의하면 사회문제가 배태, 발생되는 狀態란 첫째 그 사회의 규범(social norm)이나 理念(ideal)으로부터의 일탈상태(逸脫狀態)를 뜻하며 이와같은 상태는 個人에 의해서는 치료 내지 해결될 수 없으며 다만 집단이나 제도에 의해서만 치료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다.[10]

그의 사회문제 개념규정 방법은 한마디로 사회구조적 접근방법(社會構造的 接近方法)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또한 하나의 사회문제는 여타의 社會的 要因과 밀접히 연관되고 있음으로서 사회문제가 일단 發生되면 그것은 他要因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一連의 連鎖效果와 反應을 통해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량문제, 빈곤, 공해, 주택문제,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재수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분석해 볼 때 그 문제들이 발생되는 根本的이고 核心的인 문제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포착하여 그 문제로부터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Walsh와 Furfey는 사회문제의 原因을 逸脫行爲(deviant behavior)에서 究明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탈행위는 集團的 行動이나 制度에 의해서 치료,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즉 그들은 사회문제란 特定個人에 대한 個別的인 치료방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社會事業方法論 中 個別社會事業(Social Case Work)은 그 개인의 社會에 대한 不適應 乃至 無能力狀態를 개별사회사업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볼 때 Walsh/Furfey는 社會事業方法論에 대한 認識이 缺如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 R. K. Merton and R. A. Nisbet, "Social Problems and Sociological Theory in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Second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6. pp. 16—18

10) M. C. Walsh and Paul H. Furfey, "Social Problems and Social Action" New Gergy, Prent-ice-Hall, Inc. 1958. pp. 1—2

H. C. Bredemeier와 J. Toby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①사회문제란 그들이 살고있는 사회의 사회규범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좌절감에서 발생하며 ②이러한 심리적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을 때 ③이러한 좌절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전사회에 광범위하게 지배되어질 때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1]

이들은 심리적 불만의 근원인 欲求不滿(frustration)과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心理的動機로서의 희망(hope)의 혼합상태가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고 보았다. 즉 희망이 없는 욕구불만은 냉담, 후회, 퇴보, 무관심상태를 가져오며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문제의 가능성을 배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라 하였다.[12] 그러나 이것 자체가 사회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사회문제로서 설립하기 위하여는 욕구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와 함께 並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문제 성립의 조건은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된다.

美國의 社會學者 R. C. Fuller와 R. R. Myers는 "The Natural History of a Social Problems"에서 사회문제는 두가지 조건 즉 客觀的條件과 主觀的條件이 內包되어 있다고 지적했다[13]

객관적 조건이란 어떤 상황에 내포(involve)되어 있지 않는 第3者나 전문가들에 의하여 관찰되어지고 측정되어질 수 있고 또 科學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例를들면 실업문제, 인구문제, 식량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하겠다. 主觀的條件이란 어떤 상황에 내포되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상황을 문제시(Problematic)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例를들면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빈곤"이 고질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빈곤상태는 전문가(사회과학자, 사회행정가)나 第3者가 볼 때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빈곤상태에 내포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같은 상태를 자기들의 宿命으로 돌려 그대로 순응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主觀的價値判斷에 의하여 빈곤자체를 社會構造의 불평등상태에서 오는 결과로 간주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당국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고 오로지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는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관적 가치관단에 의하여 그들이 어떻게 의식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사회문제는 主觀的條件이나 價値判斷이 缺如될 때 그것은 사회문제로서 形成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Fuller와 Myers는 사회문제는 어디서 배태되어 언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어떤 方法에 의해 사회문제가 다루어지느냐의 총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

11) H. C. Bredemeier and J. Toby,
"Social Problems in America," New York Willey 1960 pp. 145—146

12) Irbing Tallman and Reece McGei, op. cit. p. 46.

13) R. C. Fuller and R. R. Myers
"The Natural History of a Social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 pp. 320—323.

둘째, 그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이해집단(interest groups)에 의한 정책결정

셋째, 사회문제의 최종단계는 제도적 기구에 의한 개혁수단(reform) 또는 정책수단이 提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

이와 같이 사회문제의 총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사회문제의 成立條件은 狀況에 內包된 사람들에 의한 문제의식, 정책결정 및 개혁수단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類似한 接近方法은 Howard S. Becker에 의해서도 시도되고 있다.[15]

Francis E. Merrill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이 사회문제 개념의 必要條件이라고 지적했다. 즉 ①측정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상황 ②그 상황이 기존가치체계를 위협한다고 생각될 때, ③가치와 그 상황과의 부조화 내지 충돌은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是正 내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될 때라고 사회문제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Merrill은 그가 지적한 이 세가지 要因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때에는 아무리 問題視되어지는 상황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문제로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6] 또한 Merrill은 사회문제를 人間의 社會的行動의 所産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사회문제는 끊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기존가치체계와 행동과의 不一致 乃至 상충(conflict)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17] 즉 가치관의 발달보다 행동양식의 변화가 더 빠를 때를 말한다.

Merrill이 提示한 이같은 사회문제 개념에 있어서는 약간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회문제는 측정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라 하였는데 사회문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例를들면 범죄 건수를 양적으로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범죄 건수는 단지 당국에 의하여 적발된 건수 내지 통계의 기초에서만 측정될 수 있지 당국에 입수되지 않는 정보는 一般人이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가치관과 행동의 부조화라고 지적했는데, 이 두 변수의 차이에서 사회문제가 제기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른 가치관間의 갈등에서 사회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人間의 사회적 또는 개인행동이란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므로 가치관과 행동간의 부조화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Robert K. Merton과 Robert A. Nisbet은 사회문제를 사회문제 배경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변동과정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사회변동 과정을 제도의 갈등 (conflict of institutions), 社會移動(social mobility), 個人化(individuation), anomie등으로 보았다.[18]

---

14) Ibid., pp. 320—323

15) I. Tallmand and R. McGee op. cit., p. 41.

16) Francis E. Merrill.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1948, p. 251

17) Ibid., pp. 251—252

18) R. K. Merton and R. A. Nisbet op. cit., p. 18.

첫째, 제도의 갈등은 가족, 교회, 지역사회 신용조합과 같은 모든 제도가 과거의 단일적 지배력을 가진 제도에서 복잡한 文化제도로 移行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personality속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문제가 배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Merton과 Nisbet에 의하면 「社會移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수직적 이동(vertical mobility)이며 다른하나는 수평적 이동 (horizontal mobility) 이라하였다. 수직적 이동이란 사회적 이동을 뜻하며 수평적 이동은 지역적 이동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동이 따르는 현상으로 그 사회의 성향, 명성, 세력양식이 변화하거나 수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사회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셋째, 個人化는 전통적 사회와 현대사회와의 차이에서 오는데 전통적 사회는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친족관계, 이웃관계, 교우관계에 의해 획득된 지위 즉 귀속적 지위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관계가 치밀하다. 이에 반하여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는 금전을 중심으로하는 계약관계인 비인간적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도덕적 관계라기 보다는 法的관계가 머욱 강조되고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獨逸의 사회학자 F. Tönnies는 이같은 기준에 의해 사회를 Gemeinschaft와 Gesellschaft로 분류하였다. 또한 G. Simmel은 현대사회의 인간행위는 시장경제를 통한 금전을 기초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고독하고 기계적인 일련의 비인간적인 요인이 지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인간화, 비개별화의 인간관계 조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결여되며 그에따라 여러 형태의 非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넷째, anomie 현상도 사회문제 배태와 직결되고 있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사회학의 術語로서 이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佛蘭西의 사회학자 E. Durkheim이다. E. Durkheim에 의하면 anomie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의 가치체계가 파괴되고 도덕적규범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적 혼란상태를 의미한다. 즉 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고 동시에 사회규범이 해이되고 또는 붕괴됨으로써 사람들의 욕구를 절제있게 통제,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규제장치가 상실될 때 anomie는 발생한다. anomie는 특히 욕구불만의 深化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개인의 행동을 同一化(identify)할 수 있는 기준과 규범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때 기존가치체계와 사회규범으로부터 離脫한 사회행위가 발생하며 이같은 비정상적인 사회행위가 支配的일 때 바로 anomie는 하나의 社會問題化된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19]

## Ⅳ. 槪念定立을 위한 客觀的 基準

우리는 위에서 여러학자들이 규정한 사회문제 개념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소견과 비판

19) Ibid., pp. 18—24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정해 보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첫째, 사회문제란 어떤 不合理한 狀況(situation)이나 事件이 社會의 대다수 사람들에 의하여 의식되어지고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있는 상황이 공평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의식되어지고 그것을 「문제시」(problematic)할 때 사회문제는 존재하며 표출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社會大多數의 구성원에 의해 의식되지 않는 限 그것은 사회문제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20]

둘째,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사회문제를 문제시하다고 느낄 때만이 아니라 이에대한 是正이나 개혁을 위한 사회복지, 사회정책, 또는 사회사업과 같은 集合的行動(collective action)으로 나타야만 한다. 만약 是正이나 개혁을 위한 집합적 행동이 표출되지 않는다면 사회문제는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이같은 기준은 어떤 문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식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회문제라고 規定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사회문제란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手段이나 方法이前提되어 있을 때 限해서 그 狀況을 사회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문제는 사회변동(social change)으로 인한 기존질서의 붕괴로부터 나타나며 또한 새로운 사회구조나 제도에 대한 재적응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변동을 "社會發展"을 위한 하나의 必要條件으로서 파악할 때 사회문제는 곧 사회발전을 위한 必要惡(necessary evil)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발전" 없는 정지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붕괴상태에 處해 있는 사회라고 보아야 하겠다.

넷째, 사회문제란 專門家나 第3者에 의하여 分析되어지고 立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객관적 측정에 의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가치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관적 가치판단이란 인간생활의 규범이나 바람직한 행위를 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란 그 사회의 규범이나 바람직한 행위를 이탈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 할 때 주관적 가치판단없이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命題는 매우 중요한 事實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여기에 同一한 狀況에 직면하고 있는 A, B의 두 사람이 있다고 假定하자. 이제 위의 基準을 적용한다면 Z라는 상황이 A에게는 問題視되지만 B에게는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個人의 主觀的 價値體系의 差異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

20) Daniel Lerner는 社會發展의 動因으로서 「感情移入」(empathy)을 지적하고 있다. empathy가 缺如되거나 感情移入度가 低位에 있을 때 社會는 침체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를 전통사회에 그는 비유하고 있다. 즉 이때 empathy의 결여란 빈곤이 사회구성원의 대다수에 의해 의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D. Lerner,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Empathy, Modernzing the Middle East" New York, 1958

다섯째, 사회문제는 희망(hope)이 있는 욕구불만(frustration) 상태이어어야만 한다. 만약 희망없는 frustration상태라면 사회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희망없는 좌절은 問題解決의 効果的인 手段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로서 이는 「發展의 必要惡」이라기 보다는 「否定的發展의 必要惡」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 V. 맺 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보다 보편타당한 사회문제 개념정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학자들이 규정한 개념과 정의를 고찰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문제 개념적 규정에 있어서의 취약성과 불합리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위해 사회문제 개념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사회문제의 개념은 확고한 내용을 가진 틀에 박힌 고정적이고 정식화(schematized)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動態的인 성격을 띠는 개념으로서 또는 유동적인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妥當한 개념규정을 위한 接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문제는 時代 文化 및 歷史價値觀, 社會變動의 深度에 따라 相異한 형태를 띠고 發生하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지만 그 개념의 기준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屬性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회문제를 객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尺度나 基準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기준을 갖춘 사회문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의 욕구불만이 効果的 手段에 의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을 사회문제로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客觀的 基準이란 ① 사회구성원의 대다수(large number of people)와 ② 주관적 욕구불만 乃至는 주관적 가치판단(value judgement) ③集合的社會行動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定立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尺度인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은 세째 기준인 집합적 행동과 직결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하며 두째 尺度의 욕구불만 또는 주관적 가치판단이 세째의 효과적 수단과 직결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욕구불만이란 희망적 좌절을 의미하며 이는 곧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을 提示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으로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